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10
----------	------

2024년 9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9월 6일 상정 ·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시민건강국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05년 4월에 설치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 나. 광역단위 사업기획 및 운영업무, 2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센터 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 정신관련 분야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기간이 '24.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①항 3호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변화로 경증 정신건강문제와 함께 중증정신질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서울시민의 마음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함.
- 정신건강증진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로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라. 주요 위탁사무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2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센터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중독관리사업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 및 당사자·가족 지원사업 등
-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 등)
-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마. 위탁유형 : 시설위탁

- 시설명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소재지, 시설규모
 - (본관)서울종로구 동숭 3길 40(일석기념관), 695.84m²(211평)
 - (별관, 청년마음건강센터)서울 종로구 대학로 12길, 238.64m²(72.1평)
 - (별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55, 299.09m²(90.4평)

바. 위탁기간 : 3년('25. 1. 1.~'27.12.31.)

사. 그간 위탁내용

선정방법	위탁기간	수탁기관
- 신규위탁 등	'05. 1.20.~'16. 3. 5.	용인병원유지재단
- 재위탁(공모)	'16. 3. 6.~'19. 5.29.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분리('16년)
- 재위탁(공모)	'19. 5.30.~'21.12.21.	서울의료원
- 재계약	'22. 1. 1.~'24.12.31.	서울의료원

아.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 2024. 5. 16. :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

- 2024. 5. 29.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2024년 제4차)

※ 작성자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향숙 (☎ 2133-7546)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의 제출 경위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제8차 '재계약'을 통해 협약이 연장된 위탁기관(서울의료원)과의 민간위탁 협약기간(3년) 만료 시기가 '24년 12월 말로 도래 예정임에 따라,
※ 8차 협약 재계약: '22. 1. 1. ~ '24. 12. 31. (3년)
- 지난 '24. 5월 말 경 제324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제출되었음.
- 그러나, 지난 제324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의안 심의 과정에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는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제8호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마감 시점('24. 5. 27.)까지' 필수적으로 완료해야 할 '사전절차'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완료하지 못하였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교육감·위원회가 제출한다.
-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즉, 집행기관은 ‘동의안’ 제출 마감 시점(’24. 5. 27.)까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심의 결과’를 동의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지 못하였음. 그리고 이에 본 동의안은 심사 보류 되었음.

※ 실제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결’은 제324회 시의회 의안 제출 마감 시점인 ’24. 5. 27. 을 지나 ’24. 5. 29.(24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이루어졌음.

(출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 44 참조)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의결된 경우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여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는 시 주관부서에서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등을 시 행정부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이에 동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24년 5. 29.에 개최된 ‘24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 권고)와 함께 이번 제326회 임시회에 다시 한번 제출되었음.

2 민간위탁 추진경위 및 개요

- 기존 민간위탁 추진 경위

차수	계약형태	위탁기간	위탁기관
1차	수익계약	’05. 1. 21. ~’06. 12. 31.	용인정신병원
2차		’07. 2. 1. ~’09. 1. 31.	
3차	공개입찰	’09. 3. 6. ~’12. 3. 5.	
4차	수익계약	’12. 3. 6. ~’14. 3. 5.	
5차		’14. 3. 6. ~’16. 3. 5.	

차수	계약형태	위탁기간	위탁기관
6차	공개입찰	'16. 3. 1. ~ '19. 2. 28. (2회 유찰로 2019. 5. 29.까지 연장)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분리('16년)
7차		'19. 5. 30. ~ '21. 12. 31.	서울의료원
8차	재계약	'22. 1. 1. ~ '24. 12. 31.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위탁유형 : 시설형
- 구 분 : 재위탁 (공모)
- 위탁기간 (예정) : 3년 ('25.1.1. ~ '27.12.31.)
- 소요예산 ('24년 기준) : 3,832,644천원 (※건물 임차료: 165,000천원 별도)

연 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년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 3,832,644천원 - 인건비 = 2,470,794천원 - 사업비 = 890,300천원 - 운영비 = 471,550천원

- 운영인력: 현원 75명 / 정원 79명 ('24. 4.30. 기준)

정원	현원	센터장 (정신과전문의)	부센터장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행정 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79명	75명	-	1	15	51	1	7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권고)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위탁 기간	심의 결과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재위탁)	공모 예정	3년 이내	적정 (권고)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필요성 검토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사업 목적은 “지역사회를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중독관리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그리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동 센터는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위탁 추진 중에 있음. 그리고 이러한 세부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동 기관은 ‘정신 건강’ 관련 사업의 ‘직접수행기관’의 성격과 ‘지원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즉, 동 기관은 “당사자 및 가족 지원, 재난심리지원, 청년 마음건강관리,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출동 등”의 정신건강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 이와 동시에, 자치구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신건강전문인력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등 연구지원”을 수행하여 “지원기관”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동 사무는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그리고 특히, ‘고도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 지식과 상당한 수준의 상담 능력 및 풍부한 현장 경험’이 필요로 하는 사무라 판단됨.
 - 예를 들어, 동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업무의 경우는 “정신질환자 관련 자·타해 위험 발생 등의 ‘긴급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과 함께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하여 이에 대응 하는 업무임.

- 그리고 이를 통해,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상 '응급입원' 절차로 진행되기도 함. 따라서, 동 사무 자체는 '자 타해 위험' 이 큰 '정신 응급 상황' 발생 시, 고도로 훈련된 '전문 요원'을 투입하여 '대상자 상담, 정신과적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
- 그리고 이와 동시에 동 업무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해 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여러 절차적 규제 역시 함께 준수해야함에 따라, '정신건강 복지법' 등에 대한 지식과 상황 판단 능력 까지 아울러 갖추고 있어야 하는 사무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 기술 지원
 - ▶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
 - ▶ 조기정신증 발굴 등 정신질환 조기발견 사업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 자치구별 정신건강 분야 기초조사, 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중독관리사업
 - ▶ 정신건강전문인력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미동의자에 대한 지원사업
-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당사자·가족 지원
- 정신질환자 복지·주거지원 및 정신재활시설 지원사업
- 트라우마 및 재난관련 사업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등 연구지원

○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정책 연구 및 평가, 교육 및 발간, 국제협력사업 등)

○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 그리고 동 사무는 법적으로도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 조례” 라 한다)제9조제4항에 근거하여 법령상 서울특별시 시장(시·도지사)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라 판단됨.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 조례」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를 요약하면, 동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는 우선, ‘고도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 지식과 상당한 수준의 상담 능력 및 풍부한 현장 경험’ 이 필요로 하는 사무라는 점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정신건강복지법」 및 「서울시 정신건강복지 조례」 에 명시적으로 동 사무를 ‘민간’에 ‘위탁’을 할 근거가 존재함에 따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동 사무에 대한 가장 최근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점수는 73.44점으로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필요적 재계약 배제 사유인 75점¹⁾ 미만에 해당함.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58)에 따르면,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는 필요적으로 ‘재계약’이 배제됨. 따라서, 평가점수 75점은 ‘실제 재계약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민간위탁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주요한 ‘기준 점수’가 됨.

- 그리고 이는 '21년 동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점수가 84.2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과거'보다 '종합성과평가' 점수가 약 10점 가량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그 주된 점수 하락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운영상 법규 및 규정(지침)' 미준수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향후 재위탁 공모 시, '수탁기관'의 '행정적 기관 운영 능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협약사항 위반 2건 (-4점) : 1)사업계획서 변경 시 '서울시'의 서면 승인 절차 미이행, 2)직원 채용 관련 공고 기간 미달
 -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1건 (-2점) : 1)임산부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감사 지적사항 발견 3건 (-0.3점) : 1)수탁 기관 및 사무 관련 사무 편람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 권고, 2)차년도 사업계획 승인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시의 승인 권고, 3)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사본 비치 요청
- 이에 더해, 최근 동 센터의 '홈페이지 일시 접속 오류'가 '24년 4월에 3건(4.2. ,4.18., 4.29.) , '24년 7월에 1건(7.26.)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당해 센터의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24년 블루터치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입찰 공고문 기준) 약 31,500 천원
- 아울러 현재 동 기관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장'이 전임 센터장 '24. 3월 퇴사 이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어, 향후 동 기관을 재위탁 공모할 경우 '센터장'의 '상근' 운영을 조건으로 하여 공모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10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05년 4월에 설치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 나. 광역단위 사업기획 및 운영업무, 2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센터 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다. 정신관련 분야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기간이 '24.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나.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①항 3호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변화로 경증 정신건강문제와 함께 중증정신질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서울시민의 마음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함.
- 정신건강증진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로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라. 주요 위탁사무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2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센터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중독관리사업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 및 당사자·가족 지원사업 등
-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 등)
-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마. 위탁유형 : 시설위탁

- 시설명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소재지, 시설규모
 - (본관)서울종로구 동숭 3길 40(일석기념관), 695.84㎡(211평)
 - (별관, 청년마음건강센터)서울 종로구 대학로 12길, 238.64㎡(72.1평)
 - (별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55, 299.09㎡(90.4평)

바. 위탁기간 : 3년('25. 1. 1.~'27.12.31.)

사. 그간 위탁내용

선정방법	위탁기간	수탁기관
- 신규위탁 등	'05. 1.20.~'16. 3. 5.	용인병원유지재단
- 재위탁(공모)	'16. 3. 6.~'19. 5.29.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분리('16년)
- 재위탁(공모)	'19. 5.30.~'21.12.21.	서울의료원
- 재계약	'22. 1. 1.~'24.12.31.	서울의료원

아.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 2024. 5. 16. :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
- 2024. 5. 29.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2024년 제4차)

※ 작성자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향숙 (☎ 2133-7546)